

2025년도 출자·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37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. 11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라, '25년도 당초예산'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제안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3. 출연개요

(단위: 천원)

순번	출연기관	출연금	주요사항
계	7개	8,569,499	
1	강원연구원	50,000	평창군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지원
2	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	2,550,000	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
3	한국지방세연구원	5,312	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
4	강원도관광재단	30,000	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, 지역관광 진흥 추진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
5	평창관광문화재단	2,621,349	관광·문화·축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인 평창관광문화재단 출연
6	평창유산재단	2,312,838	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의 재단 운영비 출연
7	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	1,000,000	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및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

강원연구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기획예산과	‘25년 출연예상액	5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재단법인 강원연구원(원장 현진권)
- 일반현황
 - 개원: '94. 9. 1.
 - 설립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2조, 「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
 - 소재지: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
 - 조직: 1실, 1국, 6센터, 10팀 현원 53명(정원 69명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‘25년 출연예정금액 : 50,000천원
- ‘25년 주요사업 내용
 - 시군별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
 - 시군협력 정책 과제 1건, 현안 과제 2건 연구용역 수행
 - 네트워킹 사업 주관
 -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내외 외부 기관과의 가교 역할
 - 시군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, 포럼, 정책콘서트, 세미나 등 개최 (연 20회)
 - 시군 1:1 전담 서비스 제공
 - 지역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
 - 연구제안 행정사항 등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드백
 -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

- 정부 및 강원도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모음집 제공 (월 4회)
- 정부 및 강원도 주간 주요이슈 및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정기 제공 (월 4회)
- 주요공모사업 캘린더 제공(연초)

□ 출연 필요성

- 강원도 대표 연구기관으로 강원도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개발 과제 수행에 따라 우리군과 연계된 핵심정책 개발이 가능
- 주요 정책·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·연구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필요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- 행정안전부

제13조(운영재원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- 「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 - 강원도

제4조(기금)

-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"강원연구원 육성기금"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·군 및 그 외의 출연금,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.

제5조(운영경비)

-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② 도 및 시·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내역

- 출연액: 50,000천원

- 공모사업 동향 분석자료 제공(월 4회),
- 정책 연구과제(1건) 현안과제(2건) 용역 수행
- 포럼 · 토론회 실시(필요시 1회), 수시과제 · 정책메모 수행(2건)
- 전담 정책자문창구(코디네이터) 운영

□ 출연 기대효과

- 군 역점사업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지원 강화
- 정책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
- 정책·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조사·연구로 자문기능 강화
-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(강원포럼 등)

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인재육성과	‘25년 출연예상액	2,55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(이사장 심재국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: 1990. 8. 10. *명칭변경: 2024.10.02.
 - 설립근거: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소재지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(평창군청 인재육성과)
 - 조직구성: 이사회 10명(이사장 1, 이사 7, 감사 2)
 - 재산현황: 12,310백만원(기본재산 10,569, 보통재산 1,741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‘25년 출연예정금액: 2,550,000천원
- ‘25년 주요사업 내용
 - 관내 초·중·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 -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급(등록금 전액 지원)
 - 지역 우수인재 발굴·육성 지원 및 위탁사업
 - 장학기금 확충 및 기부자 예우

□ 출연 필요성

- 지역의 대표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
- ‘25년도부터 주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사무집행기관인 사무국 신설, CI개발 및 뱃지 제작, 재단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

하여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사업 추진 기구로 개편할 계획임.

- 장학재단의 다각적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, 다양한 학습지원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학기금 출연이 필요함.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□ 산출내역

구 분	주요 내용	금액(천원)	비고
계		2,550,000	
장학사업	·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(초·중·고·대)	2,200,000	
	· 인재육성사업	160,000	
기타 목적사업	· 재단 CI개발·뱃지디자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	100,000	
	· 재단 리플렛, 기념품, 홍보영상 등 홍보물 제작	60,000	
재단 운영비	· 위원회 수당, 결산수수료, 사무운영비, 여비 등	30,000	

□ 출연 기대효과

- 전문적 교육사업 추진 기구로 확대하여 교육환경 다변화 대응 및 지역의 열악한 교육인프라 개선
- 다각적인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체계 구축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과 대상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□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설립허가 기준) ①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"기본재산"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

□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6조(장학기금의 출연) ①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세정과	‘25년 출연예상액	5,312천원
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한국지방세연구원(원장 강성조)
- 일반현황
 - 설립일: 2011. 2. 28.
 - 설립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
 - 소재지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 - 조직구성: 5실 1사업단 5센터, 정원 88명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‘25년 출연예정금액 : 5,312천원
- ‘25년 주요사업 내용
 - 사용용도: 인건비, 연구사업비, 경상운영비, 시설비 등
 - *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

□ 출연 필요성

-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
-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
-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· 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·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· 운용하여야 한다.
-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1. 1만분의 1.2

□ 산출내역

- 출연금 산정 :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× 1.2/10,000

(단위:천 원)

'23년 결산 보통세			'25년 출연금
계	현년도	과년도	
44,286,042	43,247,480	1,020,562	5,312

□ 출연 기대효과

-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기여
- 전문적인 지방세정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발전 도모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-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관광정책과	‘25년 출연예상액	3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(대표이사 최성현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: 2020. 10. 13.
 - 설립근거: 지방출자 · 출연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
 - 소재지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89, 세종빌딩 3층(퇴계동)
 - 조직구성: 1본부 3실 8팀(운영인력 35명)
 - 기본재산: 금50,000천원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‘25년 출연예정금액 : 30,000천원
- ‘25년 주요사업 내용
 - 관광정보 조사·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
 -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및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
 - 강원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
 - 국제회의 유치·지원 등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

□ 출연 필요성

-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·시군 통합형 관광 전문기관으로써
- 도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강원관광재단을 관내 관광산업의 전략적 추진 기구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도모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4조

□ 산출내역

- 18개 시·군 각 30,000천원 균등 부담

□ 출연 기대효과

- 시·군간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
- 도내 지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진흥 교류 통합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- 문화, 예술, 장학(樂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-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조례

- 제4조(재정지원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평창관광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관광정책과	‘25년 출연예상액	2,340,523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평창관광문화재단
- 설립형태: 비영리재단법인
- 설립예정: 2025. 1.(예정)
- 소재지: 물구비회관(대화면 상안미4리 1185-5번지)
- 조직구성
(이사회) 12명(이사장 1, 이사 9, 감사 2)
(사무처) 24명(사무처장 1, 경영지원팀 4, 관광마케팅팀 8명, 문화진흥팀 7, 지역축제팀 4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‘25년 출연예정금액 : 2,340,523천원
- ‘25년 주요사업 내용
 - 관광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기획, 관광사업 기획자 양성
 - 공연 및 전시사업 등 지역주민 문화사업,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·지원
 -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, 홍보 마케팅 및 전문가 육성
 - 관광·문화·축제 종사자 전문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

□ 출연 필요성

- 평창군을 세계 선진관광의 메카로 위상을 높여 관광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 조직 기반 마련
- 격동하는 관광과 문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선제적·적극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문화 전담기구 설치 필요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
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구 분	비 고
운영비 (1,295,523천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인건비 1,005,883천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본급: 552,152천원- 시간외수당: 77,804천원- 복리후생비: 198,300천원- 기간제인건비: 69,185천원- 퇴직적립금: 45,994천원- 사회보험료: 62,448천원○ 관리비 289,640천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일반수용비 : 42,820천원- 임차료 : 16,440천원- 행사운영비 : 35,000천원- 공공운영비 : 20,280천원- 여비 : 17,280천원- 유지보수비 : 24,200천원- 업무추진비 : 14,200천원- 위원회수당 : 5,000천원- 기타 : 114,420천원

사업비 (1,045,000천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창관광문화재단 관광분야 출연금: 470,0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·문화·축제 종사자 교육 및 세미나 개최: 60,000천원 - 로컬크리에이터 SNS 서포터즈 양성: 50,000천원 -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: 160,000천원 - 시티투어 상품 운영: 200,000천원 ○ 평창관광문화재단 축제분야 출연금: 575,0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촌클래식축제 행사지원: 150,000천원 - 평창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: 60,000천원 - 평창효석문화제 행사지원: 230,000천원 - 평창농악축제 행사지원: 55,000천원 - 평창백일홍축제 행사지원: 80,000천원 	
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□ 출연 기대효과

- 평창군 관광·문화·축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주민 복리 증진

관계법령 발췌

①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③ 지역문화진흥법

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평창관광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문화예술과	‘25년 출연예상액	280,826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평창관광문화재단
- 출범예정: 2025년 1월
- 주요사업: 평창군 관광·문화·축제 분야 사업 전반
- 소요예산: 28억원(자본금 1, 운영비 13, 사업비 14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‘25년 출연예정금액 : 280,826천원
- ‘25년 주요사업 내용
 - 찾아가는 공연·전시·시네마사업
 - 주민주도 문화사업
 - 문화예술 기획사업
 -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사업(평창생활문화센터, 달빛 생활문화센터,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)

□ 출연 필요성

-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평창군 문화예술의 중장기적 로드맵 가동
-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 및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
- 군민 문화예술 교육·축제·공연 등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
- 문화예술 행사와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□ 산출내역

구 분		비 고
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문화예술 사업비 280,826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찾아가는 공연·전시·시네마사업 120,000- 주민주도 문화사업 50,000- 문화예술 기획사업 30,000-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사업 80,826	

□ 출연 기대효과

- 평창관광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평창 문화예술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통한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고 평창군의 문화적 성장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평창유산재단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올림체육과	‘25년 출연예상액	2,312,838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(이사장 심재국)
- 일반현황
 - 소재지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-27
 - 조직: 1사무처 3팀(총무기획팀, 유산사업팀, 문화사업팀)
 - 주요기능: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및 동계올림픽 유·무형자산 활용 유산사업, MICE사업 유치 및 발굴, 올림픽 도시 및 유관기관·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, 주민참여 유산사업 발굴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‘25년 출연예정금액: 2,312,838천원
- ‘25년 주요사업 내용
 -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추진, 동계올림픽 유·무형자산 활용유산사업, 주민참여 유산사업발굴
 - 올림픽개최도시 레거시 가치전파 및 동계스포츠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,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
 - 올림픽 유산사업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▣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| ▣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|
| ▣ 올림픽유산 교육 프로그램 | ▣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사업 |
| ▣ 평창유산재단 홍보부스 운영 | |
| ▣ 올림픽 굿즈 기념품 디자인 개발 및 공모 | |
| ▣ 올림픽테마파크 개관식 | |

- 문화사업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□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| □ 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|
| □ 평창 청소년 K-POP 아카데미 운영 | |

□ 출연 필요성

- 참여형 동계올림픽 유형·무형 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올림픽 도시로써 주민들의 자긍심 함양 확대
- 올림픽 유산 활용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산교실 운영으로 유산 사업 지속 발굴 추진
- 지역 내 동계스포츠 산업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

□ 출연 근거

- 「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 및 제17조

제15조(운영재원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
3.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

제17조(재정지원)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□ 산출내역

- 출연금: 2,312,838천 원

(단위: 천 원)

구 분	내 용
운영비 (1,426,838천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인건비 728,419천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보수(기본급, 급식비, 수당 등) 609,589천원- 퇴직급여 67,379천원- 평가급 51,451천원○사무관리비 161,620천원○공공운영비 29,800천원○행사운영비 5,000천원○기타복리후생비 32,320천원○여비(국내, 국외) 78,400천원○업무추진비 12,000천원○직무수행경비 35,940천원○교육훈련비 21,600천원○수선유지교체비 10,000천원○관서업무비 6,080천원○포상금 500천원○사회보험부담금 85,839천원○시설비 150,000천원○자산취득비 69,320천원
사업비 (886,000천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평창눈동이패스포트 200,000천원○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100,000천원○올림픽 유산 교육 프로그램 60,000천원○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사업 138,000천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심포지움(22,000), 걷기대회(22,000), 그리기대회(22,000), 2018평창동계올림픽리마인드기획전(72,000)○평창유산재단 홍보 부스 운영 18,000천원○올림픽 굿즈 기념품 디자인 및 개발 120,000천원○평창 올림픽테마파크 개관식 50,000천원○문화예술육성지원 80,000천원○평창청소년 오케스트라 60,000천원○청소년 K-POP아카데미 60,000천원

○ 2024/2025년도 출연금 편성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24년도 출연금 예산	25년도 출연금 예산	비교증감
합 계	1,342,896	2,312,838	969,942
운영비	636,896	1,426,838	789,942
사업비	706,000	886,000	180,000

○ 운영비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2024년	2025년	증감액
인건비	390,050	728,419	338,369
사무관리비	99,300	161,620	62,320
공공운영비	6,400	29,800	23,400
행사홍보비	1,000	5,000	4,000
복리후생비	14,880	32,320	17,440
여비	40,200	78,400	38,200
업무추진비	12,000	12,000	0
직무수행경비	19,080	35,940	16,860
교육훈련비	10,000	21,600	11,600
수선유지비	5,600	10,000	4,400
관서업무비	2,900	6,080	3,180
포상금	500	500	0
연금부담금	29,586	85,839	56,253
시설비및부대비	0	150,000	150,000
자산취득비	5,400	69,320	63,920
합 계	636,896	1,426,838	789,942

○ 사업비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2024년	2025년	증감액
‘평창의 기억’ 디지털 아카이브 유산사업	20,000		△20,000
올림픽유산 참여형 사업 활성화	20,000		△20,000
평창 눈동이 패스포트	220,000	200,000	△20,000
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	100,000	100,000	0
올림픽유산 교육 프로그램	170,000	60,000	△110,000
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사업		138,000	138,000
평창유산재단 홍보 부스 운영		18,000	18,000
올림픽 굿즈 기념품 디자인 개발 및 공모		120,000	120,000
평창 올림픽테마파크 개관식		50,000	50,000
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	80,000	80,000	0
평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	40,000	60,000	20,000
평창 청소년 K-POP아카데미 운영	56,000	60,000	4,000
합 계	706,000	886,000	180,000

□ 출연 기대효과

-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사업, 올림픽 유산에 대한 교육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
- 다양한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
- 평창올림픽 테마파크의 성공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「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(운영재원)

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
3.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부금 등

□ 「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재정지원)

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농산물유통과	'25년 출연예상액	1,000,000천원
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(이사장 황성현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: 2021. 8. 23.
 - 설립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운영근거: 「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 - 소재지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220
 - 운영인력: 1실, 4팀 23명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5년 출연예정금액: 1,000,000천원

- '25년 주요사업 내용

사업명	'23년 매출액	'24년 매출액 (9월 기준)	비고 (수수료)
합계	16,771	13,469	
학교급식사업	3,221	2,186	-
공공급식 공급	48	92	4%~10%
로컬푸드 직매장 운영	850	711	10~20%
온·오프라인 농산물유통	462	451	5~10%
대형소비처 농산물 위탁 판매	6,315	3,574	0.3~10%
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	615	251	9.8%
고향사랑기부제	60	84	-
한약재유통지원센터 운영	5,200	6,100	1%
마늘가공센터 운영	-	20	-

□ 출연 필요성

- 평창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
-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 강화
-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학교급식, 공공급식, 기획생산 체계구축,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「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군은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□ 산출내역

- 출연금: 1,000,000천원(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)

■ 인건비 888,921천원

- 임기제 4,987,500원×1명×12월 : 59,850천원
- 6급 팀장(15호봉) 3,848,900원×1명×12월 : 46,187천원
- 6급 팀장(13호봉) 3,664,400원×1명×12월 : 43,973천원
- 7급(12호봉) 3,219,200원×1명×12월 : 38,631천원
- 8급(10호봉) 2,717,900원×1명×12월 : 32,615천원
- 8급(7호봉) 2,434,400원×2명×12월 : 58,426천원
- 8급(11호봉) 2,804,500원×1명×12월 : 33,654천원
- 9급(7호봉) 2,197,300원×1명×12월 : 26,368천원
- 9급(6호봉) 2,122,900원×1명×12월 : 25,475천원
- 9급(5호봉) 2,066,900원×1명×12월 : 24,803천원
- 실무직(5호봉) 2,041,000원×1명×12월 : 24,492천원
- 실무직(4호봉) 2,003,000원×4명×12월 : 96,144천원
- 실무직(3호봉) 1,965,000원×2명×12월 : 47,160천원
- 기간제근로(5시간) 1,350,000원×5명×11월 : 74,250천원
- 정액급식비, 정근수당, 가족수당, 연차수당, 명절휴가비, 시간외수당 등 : 175,293천원
- 파견공무원 수당 400,000원×2명×12월 : 9,600천원
- 퇴직급여 72,000천원

■ 일반운영비 111,079천원

- 사무관리비(일반수용비, 임차료, 운영수당 등) : 65,479천원
- 공공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시설·장비 유지비 등) : 45,600천원

□ 출연 기대효과

-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평창군 농업·농촌 환경 조성
- 평창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·소비·복지·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는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군은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